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77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김은혜 · 김위상 · 박정훈
서천호 · 김소희 · 안상훈
송언석 · 정성국 · 김상훈
이양수 · 최수진 · 김미애
주호영 · 김재섭 · 조정훈
김희정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과 일부 성인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픽시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

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크기와 구조를”을 “크기, 구조 및 장치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자전거는 크기, 구조 및 장치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중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
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자

제25조제1항 중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
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안전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자전거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20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전거를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요건에 맞추도록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크기, 구조 및 장치를----- --.
1의2. ~ 4. (생략) <u><신설></u>	1의2. ~ 4.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3(자전거의 안전요건 등)</u> <u>① 자전거는 크기, 구조 및 장치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u> <u>②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u>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

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자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

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② (생 략)	<u>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u> <u>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u> <u>로에서 운행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